

대구예술대학교 전임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

(제정 2012.03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3.04.02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(개정 2019.12.10. 법인이사회)

(개정 2021.02.01. 법인이사회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」 제12조 (신규임용의 절차 및 기준) ① 항에 따라 전임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채용공고 및 절차) 교원의 채용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.

1. 채용분야(전공) 및 채용인원은 채용요청전공 교수 의견 또는 우리 대학교 교원확보율 정책 상황 등을 참작 후 총장이 결정하여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.
2. 신규교원은 특별채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마감일 15일 전까지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.
3. 신규채용 심사절차는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(면접심사 중 공개강의심사를 겸할 수 있음)로 한다.
4.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임용기준) ①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,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.

③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채용 전공분야 전공자로 한다.

제4조(기초심사 및 전공심사) ①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위원은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 교원으로 총장이 위촉 하며 3분의1 이상은 타 대학 교원으로 한다.

② 기초심사는 지원자들의 학력(학사, 석사, 박사) 및 채용전공과 동일여부, 외국학위 사항 등을 심사하며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지 못한 지원자,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용심사대상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지원자, [제3조(임용기준) ①, ②] 항과 관련하여 3분의 2를 초과되는 채용전공 지원자는 심사에서는 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(개정 2019.12.10.)(개정 2021.02.01.)

③ 전공심사는 지원자들의 최근3년의 대학 교육경력(전문대학 이상 주당강의경력), 최근 3년의 연구업적(논문, 전시, 공연 등 질적 평가시 인정비율을 달리 할 수 있음), 최근 3년의 실무경력을 심사하며 심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[연구업적은 우리대학 교수업적 평가규정을 참조하여(학, 석, 박사논문은 연구업적평점에서 제외)심사함]

(개정 2019.12.10.)(개정 2021.02.01.)

④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후 평점상위자 중 채용 전공별 5순위 이내로 총장이 면접대상자를 정한다.

제5조(면접심사 및 공개강의심사) ① 면접심사 및 공개강의심사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공개강의심사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

② 면접심사 배점은 25%까지 정할 수 있으며 공개강의심사는 전공 관련 전문지식, 강의 계획 등으로 강의하고 평가한다.(개정 2021.02.01.)

제6조(임용동의 및 제청) ① 총장은 채용분야별 총평점(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, 공개강의심사)순위가 높은 임용후보자 4배수이내로 무순위로 정하여(단, 총평점이 현저히 낮은 자는 제외할 수 있고 임용후보자가 4배수가 안되는 분야는 4배수이하로 정할수 있음)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법인 이사회에 임용 제청하며 이 경우 임용직급을 표기할 수 있다.(개정 2013.4.2.)

제7조(특별채용) ① 특별채용 분야와 인원은 채용요청전공 교수 의견 또는 우리 대학교 정책방향을 참작 후 총장이 결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으며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 별로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.

② 기초심사, 전공심사는 총장이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3인 이내로 위촉하여 심사하며 면접심사(면접심사 중 공개강의심사를 겸할 수도 있음)위원을 위촉하여 면접심사 할 수 있다.

③ 특별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해당분야에서 그 업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
2.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교육 또는 연구경력(근무실적)이 3년 이상인 자
3. 외국어 교과목을 담당하는 외국인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자
4. 타 대학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
5. 해당분야에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쟁채용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
④ 임용기준 및 심사기준 등은 일반채용 기준으로 한다.

제8조(기타)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.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